
「2016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용자사업」 공고(수정)

(재)한국사회투자자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용자사업」을 진행합니다. 관계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6. 4. 1.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1. 2016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용자사업 안내

1) 용자사업 종류

- 사회적기업 용자사업
- 소셜하우징 용자사업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사회적프로젝트 용자사업

2) 용자사업별 개요

□ 사회적기업 용자사업

- 사업명 : 2016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기업 용자사업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하여 운영 안정화 기여
-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서울소재 법인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대상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외 소재 가능

- 세부내용 : 운전자금(원재료 구입, 상품구입 등), 시설자금(사업장 설비비, 확장비 등), 기타자금(사업개발비, 단기자금 등) 지원
- 용자조건 : 법인(단체)당 10~200백만 원(연 2%), 용자기간 최장 5년, 대표자 등 보통보증(필요시 공증, 담보권 추가설정)

□ 소셜하우징 용자사업

- 사업명 : 2016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소셜하우징 용자사업
- 사업목적 : 다양한 유형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및 사회주택사업 확대
- 신청자격 : 서울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 예정인 서울 소재 법인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대상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외 소재 가능
 - 공공성이 담보되는 市·공공의 사업수행자의 경우도 가능
 - 사업대상지 확보 및 설계, 인허가, 시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필요
- 세부내용 : 매각사업, 임대사업 중 선택 참여 가능
 - 매각사업 : SH공사의 임대사업용 주택을 신축리모델링하여 매각하는 사업
 - SH공사 매입 가능 조건 충족 (SH공사의 최근 공고 내용 반영)
 - 임대사업 : 민관협력 임대, 민간 임대, 민간임차 후 재임대 목적의 주택 공급 사업
 -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 또는 준공공임대 주택 등록
 - 임차 후 재임대의 경우 용자액 산정, 담보·보증 탄력 적용
- 용자조건 : 법인(단체) 당 최대 2,500백만 원(연 2%), 총 사업비의 70% 이내(사업부지 매입자금 포함), 용자기간 최장 3년(매각) 또는 5년(임대), 대표자 등 보통보증 및 사업대상 부동산 또는 전세권 근거당 설정(필요시 공증, 담보권 추가설정)
 - SH매각사업 및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토지임대부주택』,

『공동체주택』 등 서울시 주택정책과 사업 참여 법인(단체)는 총사업비의 90% 이내 용자 신청 가능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사업명 : 2016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사업목적 : 중간지원기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및 저변 확대 추구
- 신청자격 :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 신청기관의 소재는 무관하나 채용자 대상은 서울 소재에 한함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금융 수행
- 세부내용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과 기관 자부담금을 매칭
 - 본사업, 시범사업 중 선택 참여 가능
 - 본사업 : 법인(단체) 당 200~1,000백만원, 기금:자부담 = 2:1 매칭
 - 시범사업 : 법인(단체) 당 30~60백만원, 기금:자부담 = 3:1 매칭
- 용자조건 : 용자기간 최장 5년, 금리 0%(채용자금리 최대 연 4%), 대표자 등 보통보증(필요시 공증, 담보권 추가설정)

□ 사회적프로젝트 용자사업

- 사업명 : 2016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프로젝트 용자사업
- 사업목적 :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추구
- 신청자격 : 사회적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서울 소재 법인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대상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외 소재 가능
- 세부내용
 - 서울시 내에 추후 확장 가능성 등 사회적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해야 함
 - 시민참여사업, 다자간 협업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법 인정

- 용자조건 : 법인(단체) 당 60백만원~2,500백만 원(연 2%), 총 사업비의 90% 이내, 용자기간 최장 5년, 대표자 등 보통보증 및 부동산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부동산 담보권 설정(필요시 공증, 담보권 추가설정)

*** 용자사업별 세부조건**

사 업 명	용자한도	용자기간	용자금리	담보조건 (용자액기준)
사회적기업 용자사업	법인(단체) 당 10 ~ 200백만원	최장 5년	연 2%	대표자 등 보통보증 및 사업 대상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 (부동산사업의 경우) - 필요시 공증, 담보권 추가 설정
소셜하우징 용자사업	법인(단체) 당 최대 2,500백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서울시 사업참여자의 경우 90% 이내)	최장 3년 (매각사업) 최장 5년 (임대사업)	연 2%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본사업 > 법인(단체) 당 200 ~ 1,000백만원 (기금:자부담=2:1 매칭) < 시범사업 > 법인(단체) 당 30 ~ 60백만원 (기금:자부담=3:1 매칭)	최장 5년	0% (재용자금리 최대 연 4%)	
사회적 프로젝트 용자사업	법인(단체) 당 60~2,500백만원 (총사업비의 90% 이내)	최장 5년	연 2%	

2.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6. 12. 2 (토·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기간 내 수시 신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서울시 중구 수표로 7, 2층 (충무로 2가 51-3 인성빌딩 2층)

3. 심사

□ 심사 절차

- 서류심사→현장심사→심의·선정→결과발표→약정 체결 단계로 진행
- 신청 후 심사, 약정체결·용자까지 약 1~2개월 내외 소요 예정
(단, 심사일정은 (재)한국사회투자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

□ 심사 항목

- 기업역량(업력, 경영능력, 재무지표 등), 사업타당성(사업계획, 수익구조, 상환계획 타당성, 자금필요성 등), 사회적가치(공익성, 사회적성과 등) 등

□ 심사 관련 유의사항

- 신청기관은 재단 요청 시 현장조사, 시설물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심사 관련 사항은 (재)한국사회투자자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심사항목 등 심사 세부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이 가능합니다.

4. 약정체결

- 약정 구비서류와 일정은 개별 안내 후 진행
- 약정 체결 시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목록

※ 모든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신청직전월 기준 원칙)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에 법인 인감 날인을 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하드카피 외 파일(pdf, hwp, excel, 스캔 등)도 자체 USB 또는 담당자 메일로 제출

구분	서류명	부수	형태	비고
기본서류	용자신청 공문	1부	원본	기관 자체 양식으로 제출
	용자신청서	1부	원본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www.social-investment.kr) ; '주요사업'-'>'사업광고' 에서 서식 다운
법인	금융거래확인서(법인)	각 1부	원본	주채무 금융기관 분 제출 ※ 대상자에 한함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원본	등기소 발급
	주주명부(조합원 명부)	1부	사본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포함 *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명부 제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각 1부	사본	
	유급근로자명부	1부	사본	용자신청서 내 '고용현황/형태/임금' 양식 참조 (용자신청서 기재로 대체 가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입내역확인서	각 1부	원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출력
	4대보험 납부확인서	1부	원본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증명서 발급신청
	법인 정관	1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제출
	납세증명서(국세)	1부	원본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납세증명서(지방세)	1부	원본	민원24시(www.minwon.go.kr) 발급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사본	임차사업장인 경우만 해당
	대표자	금융거래확인서(대표자)	1부	원본
주민등록 등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 1부	원본 사본	민원 24시(www.minwon.go.kr) 발급 ※ 대표에 한함 (전/월세 시)
기타 1	법인형태별 증빙서류	1부	사본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업보고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한 최근 3개년도 분) - 협동조합 : 설립신고필증 - 마을기업 : 지정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기타 : 벤처기업확인서 등 기타 법인형태별 증빙
기타 2	부동산 사업의 경우 (소셜하우징 용자사업 등)	각 1부	원본 (사본)	토지이용계약서, 지적도, 토지-건축물 대장 및 등기, 매매계약서, 신고필증, 도면, 건축허가서, 건설업 실적, 기술자재직현황 등 해당 부동산 사업 관련 서류 일체
기타 3	기타 추가자료 제출가능	각 1부	사본	- 자체 기업소개서(사업계획서) 있을 시 함께 제출 - 용자신청서 내용 증빙자료(외부협력, 수상·인증내역, 전문기술 보유, 사회적성과 데이터, 대표자 및 주요인력 이력서 등) - 사업수행실적, 채용조달 증빙자료, 추천서, 사회공헌실적, 외부감사보고서, 물적 담보 증빙 등

※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위 제출서류는 전 사업 공통입니다. 단 기타 1~3의 경우 신청기관 형태 및 신청 사업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신청직전월 기준 원칙)
- 제출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에 법인 인감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재)한국사회투자는 심사 중단, 융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기관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재)한국사회투자는 필요시 신청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용자제한기업

-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용자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6개월 내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경우는 제외
-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용자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6개월 안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개인회생신청·파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경우는 제외.

- 자가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의 자가주택에 용자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6개월 안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처분) 등의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회적 금융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도박·사행성 게임·사치·향락 등)을 영위한 경우

7. 상담 · 문의처

- 임팩트사업부 대표번호 : 02-2285-4399 / 02-2277-7684
- 이메일 문의 : ask@sifund.kr